

1998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및
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

審 查 報 告 書

1998年 8月 12日
豫算決算特別委員會

1. 回附豫算

가.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

2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8년 7월 31일 (평창군수)

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8월 6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58회 평창군의회 (임시회)

○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 8월 6일 상정

○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 8월 12일 의결

3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)

○ 제안이유

- '98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IMF여파로 국가재정 지원의 감소 및 자체 세입 감소와 사업비 변경등의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'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- '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0,04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,05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,84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,50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8,20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,550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- 세입예산액의 증가액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▲671백만원, 세외수입 4,391백만원, 지방 교부세 ▲488백만원, 지방양여금 ▲673백만원, 국도비보조금 3,428백만원, 지방채 2,520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93백만원, 국도비 보조금 557백만원임.

- 세출예산액의 증가액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 557백만원, 사업예산 8,700백만원, 채무 상환 4백만원, 예비비등 ▲754백만원이며,

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백만원, 사업예산 1,279백만원, 채무상환 355백만원, 예비비등 ▲85백만원임.

4. 檢討報告의 要旨

-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'98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IMF여파로 국가재정 지원의 감소 및 자체세입감소와 사업비 변경등의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 총 1,100억 4,969만원으로 기정예산 999억 9,194만원 대비 10.1%인 100억 5,774만원이 증액 되었음.

◇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보면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.1%인 85억 739만원이,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.3%인 15억 5,034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음.

◇ 재원확보면에서는 인건비등 최대한의, 가용재원을 발굴하여 편성한 노력이 엿보였으나

- 군정수행관련 군정홍보비 3,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, 이는 전년도의 군정홍보의 효과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, 예산편성 부기상에 명확히 등재하여 낭비성 예산의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명확한 예산계상이 요구되고 있음.
- 아울러 의장단 및 군수, 실과소장의 시책사업추진 및 각종 행사참석 관련하여 특수활동비가 1억 2,1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, 이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했던 부분임.
- 또한 국·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변경확정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·감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축소 내지는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음.

-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총 44건에 328억 5,845만원으로 총 예산규모 1,100억 4,969만원 대비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6.2%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,

향후 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.

- 전반적으로 IMF여파로 국가재정의 지원 감소 및 자체세입의 감소로 수항리사지문화재보수, 횡계명태덕장지구 택지개발비, 진부쓰레기매립장, 용평면 관사 신축등 여러사업 자체가 유보 내지는 취소가 되는등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영안실 오수정화시설 설치 사업등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부서간 업무추진의 결여로 인하여 현재 개장식을 갖고 운영되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.
- 기타 일반운영비등 예산안 내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됨.

5. 質疑 및 答辯要旨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국민운동추진사업자 지원금 1,000만원의 내역은?	○ 수상안전기동대 500만원과 해병전우회 500만원임.
○ 종합운동장잔디조성관련하여 관리대책은?	○ 현재 종합운동장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본 인력을 활용하여 관리해 나갈 것임.
○ 장평노인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?	○ 당초 물리치료사등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노인복지 및 건강에 이바지 할려 하였으나 최근 구조조정안이 이루어 지고 있어 구조 개편후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음.
○ 우리군 가축을 횡성 도축장을 이용하므로 인하여 도축세가 타 시군으로 나가는데 따른 대책은?	○ 인력(수의사), 장비 및 일일 도축할 수 있는 마리수등이 적어 관내에서 도축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움.
○ 일부 농어촌도로 확·포장사업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부서간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져 사업성을 분석,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생각은?	○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성을 분석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됨.
○ 평창읍 소도읍 개발사업의 내용은?	○ 구경찰서 후문에서 초등학교까지 폭 6M로 확·포장 개설하는 내용임.

6. 討論要旨

- 가. 특별교부세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지역의 현안사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어느 특정의 사업, 특정의 개인에게 편중이 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 되어야 할 것임.
- 나.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행사는 주관이 강원도인 만큼 강원도의 예산편성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,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를 분석한 후,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임.
- 다. 당초사업계획 입안시 예산계상에 있어 총 사업비의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, 사업추진중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무슨 무슨 사업 마무리등으로 사업비를 또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있다 하겠음.
- 라. 사업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초사업명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, 변경되었다면 일관성 있게 사업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나, 실과소별로 상이한 사업명을 사용하고 있는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음.

8. 審査結果

- 일반회계 : 원안의결
- 특별회계 : 원안의결

9. 少數意見의 要旨

- 없 음 -

10. 其他 必要한 事項

- 없 음 -

첨부 :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
예산안 1부. 끝.

199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

1. 예산총칙 : 제1조 ~ 제7조 변동사항 없음.
2. 일반회계 : 세입세출 변동사항 없음.
3. 특별회계 : 세입세출 변동사항 없음.